

- 민·관·군이 함께 이용하는 인왕산 휴게공간 조성 -
국유재산 공동사용에 관한 협약서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내 인왕3분초 시설을 민·관·군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.

※ 재산내역 :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산4-36번지 인왕3분초 시설(세부명세 : 붙임1)

제2조(일반원칙) ① 이 협약서는 다음 근거에 따라 체결한다.

1.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8조(협약체결)
 2. 국방부 국유재산과-679('14.2.17.) 기부채납 대상물의 범위에 대한 기재부 회신내용 통보
 3. 국방부 국유재산과-1013('14.3.4.) 국유재산의 공동사용(민관군) 협약서 체결 관련 주의 사항 전달
- ② 서울특별시는 국방부 소관 인왕3분초 시설을 시민휴게공간으로 이용하고, 수도방위사령부는 서울특별시가 인왕3분초 시설을 시민휴게공간으로 이용하는 조건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3조(조건부 이용원칙) ① 수도방위사령부는 서울특별시에 인왕3분초 시설에 대한 민·관·군 공동사용의 관리와 운영을 위임한다. 다만, 군사작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서울특별시는 인왕3분초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'붙임2'에 따른 조건을 준수한다.

제 2 장 인왕3분초 시설관리 및 운영

제4조(인왕3분초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) ① 서울특별시는 인왕3분초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책임이 있다.

- ② 서울특별시는 인왕3분초 시설이 수도방위사령부 군사시설이며,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시민을 위해 평시 상황에 조건부로 개방하는 시설임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명기한다.
- ③ 서울특별시는 인왕3분초 시설을 민·관·군 공동사용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법적·물적·인적 책임을 진다.
- ④ 서울특별시는 인왕3분초 내·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.
- ⑤ 서울특별시는 인왕3분초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, 상·하수도 사용료 등과 인왕3분초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,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인왕3분초 시설은 사용 목적 이외의 집회 및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. 다만, 서울특별시의 사전 요청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(재산관리) ① 서울특별시는 인왕3분초 시설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·대여·매매 또는 교환 등 국유재산의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② 수도방위사령부는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인왕3분초 시설 및 관련 시설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, 서울특별시는 수도방위사령부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해지권 유보)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이 협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양 기관은 이 협약서에 따라 교환 및 제공된 정보, 자료 등을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어느 한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협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전쟁, 사변 기타 중대한 작전상의 이유로 인하여 이 협약서를 유지함이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

제7조(효력발생, 변경 및 유효기간) ① 이 협약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- 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중에도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양 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협약서의 변경은 서면으로 통보한 후 양 기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.
- ③ 이 협약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. 다만,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종료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되며, 양 기관은 언제든지 상호 합의에 따라 이 협약서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.

제8조(정기적 재검토 및 수정) ① 이 협약서는 매년 1회 협약서 체결일 기준 60일을 전후로 정기적 재검토를 실시한다.

② 이 협약서는 각 기관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, 수정,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.

제9조(협약의 성실이행)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특별시는 이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를 신의에 따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,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10조(연락처) 이 협약서에 관한 연락처 및 실무부서는 '붙임3'과 같다.

2018년 7월 12일



서울특별시
시장 박원순

박원순



수도방위사령부
사령관 김정수

김정수